

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
2022. 7. 21(목) 10:00

제23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
민간위탁 동의안
(행정문화국 교육지원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98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7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7. 13.

2. 제안이유

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체계적·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,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대상시설 :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
 - 1) 시설현황 : 동적공간, 정적공간, 사무실, 화장실 등

시설명	소재지	시설면적	정원	개소시기 (예정)	비고
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	시흥대로 164, 2층(시흥1동)	134㎡ (약 40평)	25명	22. 11월	백산초 인근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위탁일로부터 5년(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)
- 위탁내용 :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
 - 지역 초등학생 돌봄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
 - 지역연계형 돌봄 사업 추진 및 초등학생 맞춤형 돌봄 지원사업 수행
 - 수요자(초등학생) 모집 및 이용 아동 관리에 관한 사항
 - 키움센터 시설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위탁시설 관리, 운영에 관한 민·형사상 책임 및 민원에 관한 사항 관리 등

3) 선정방법 : 수탁기관 공개모집

4) 위탁금(안) : 연 152백만원(국비 18백만원, 시비 121백만원, 구비 13백만원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아동복지법 제44조의2

2)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

3)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

4)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

나. 기타사항

1) 2022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·운영 계획【교육지원과-3072 '22. 3. 4.】

5. 검토의견

가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○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

○ 초등학생 대상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탄력적 대응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

: 시설의 운영 기준 및 내용은 다음 표1 참조

표1 운영 기준 및 내용

- ① 이용대상 : 초등학생(만 6세~12세) 누구나
- ② 운영시간 : (학기중) 13:00~19:00, (방학중) 09:00~18:00
- ③ 이용정원 : 기본정원 25명, 별도정원 5명
- ④ 운영인력 : 센터장 1명, 돌봄선생님 1명
※ 일평균 이용률 70% 초과 시 돌봄선생님 1명 추가 지원
- ⑤ 이 용 료 : 월 50,000원 이내(일시돌봄 일 2,500원 이내)
- ⑥ 운영내용 : 놀이와 쉼 공간지원, 돌봄 프로그램 운영, 배움활동 지원, 돌봄기관 연계협력 등

나. 검토결과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 제1항에 “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“방과 후 돌봄서비스“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조 제2항에서는 “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.

- 따라서 법령에 관련 근거가 있고,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설치예정인 「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」의 운영을 초등돌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,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·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 - ※ 현재 우리구는 3호점까지 운영 중이며, 서울시 전체 221개소로, 위탁 210개소, 직영 11개소를 운영 중에 있음.(관련 자료 붙임 1 참조)

- 『우리동네키움센터』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,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은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으며, 민간위탁 또한 서울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사무로써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됨.

- 붙임 1.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현황 1부
- 2. 관련 법령 1부.

【붙임 1】

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현황

□ 우리구 운영현황

구 분	1호점(독산1동)	2호점(시흥2동)	3호점(시흥1동)
주 소	벚꽃로 30, 314호 (금나래초등학교 인근)	금하로 763, 302호 (금동·탑동초등학교 인근)	시흥대로39길 46, 3층 (문백초등학교 인근)
시설내부			
시설규모	79.56㎡ (24평) (아동 전용면적 : 67㎡)	103.28㎡ (31평) (아동 전용면적 : 76.84㎡)	110.09㎡ (33평) (아동 전용면적 : 79.56㎡)
운 영 일	2020. 12. 1. ~	2021. 9. 14. ~	2021. 1. 20. ~
수탁기관	사단법인 따뜻한동행 (대표 : 이일수)	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(대표 : 이상경)	비영리민간단체 마을인성학교 (대표 : 엄성분)
수탁기간	'20. 10. 26. ~ '25. 10. 25.	'21. 7. 2. ~ '26. 7. 1.	'20. 11. 20. ~ '25 .6. 30.
현원/정원	24명/20명 (기본정원 20명, 별도정원 4명)	18명/20명 (기본정원 20명, 별도정원 4명)	15명/20명 (기본정원 20명, 별도정원 4명)
종 사 자	4명 (센터장1, 전일교사1, 반일교사2)	2명 (센터장1, 전일교사1)	4명 (센터장1, 전일교사1, 반일교사2)
운영시간	(학기중) 10:00~19:00 (방학중) 09:00~19:00	(학기중) 10:00~19:00 (방학중) 09:00~19:00	(학기중) 10:00~19:00 (방학중) 09:00~18:00
이 용 료	월 50,000원(간식비 포함) ※ 일시돌봄 1일(회) 2,500원		
비 고			

□ 자치구 민간위탁 현황

전 체	위 탁	직 영	비 고
221개소	210개소	11개소 ¹⁾	

1) 중구 7개소, 용산구 3개소, 도봉구 1개소

관계 법령

아동복지법

제44의2(다함께돌봄센터)

-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“방과 후 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 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 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 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 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-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 2. 위탁계약기간
 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 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 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 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 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1.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 2.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

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

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제4조의2(민간위탁사무의 내용)

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아동·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2. 교육·도서관·체육·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보건·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4. 문화·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5. 자활·근로자복지·취업·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6. 교통·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
7. 청소·경비·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8.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

제9조(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위탁)

-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- 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·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부지, 건물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.